

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교육센터 운영 지침

제정 2023. 01. 21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「포항공과대학교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단 운영 규정(이하, “사업단 운영 규정”이라 한다)」 제6조 제4항에 따른 LINC3.0 사업단 내 산학협력교육센터(이하, 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 및 역할) ① 센터는 산학연 연계 교육과정을 개편·재구조화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적인 교육모델을 연구·개발하고,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수행한다.

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.

1. 산학연협력 교육과정 기획 및 교육사업 발굴
2. 산학연협력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3. 산학연협력 교육 및 교육사업 관리
4. 캡스톤디자인 및 현장실습 운영 지원
7. 산학연 연계 교육 대상 발굴 및 관리
8. 산학연 연계 교육환경 구축
9. 기타 센터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고 산학연협력 인력양성에 필요한 업무

제3조(조직) ① 센터장은 학내 전임교원 중에서 사업단장이 임명하고,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센터장의 임기는 사업기간을 원칙으로 하고, 센터장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LINC3.0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교체할 수 있다.

③ 센터 내 조직으로 산학협력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사업 담당, 행정업무 담당 등을 위해 별도의 인력을 둘 수 있다.

제4조(산학협력교육과정위원회) ① 센터의 운영 및 산학협력 교육 및 사업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교육과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산학협력교육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위원장을 포함하여 사업단장 및 학과 주임 교수의 추천을 받은 각 학과 대표 교수 등 20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한다.

1. 센터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

2. 본 지침 및 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행세칙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 3.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사업 운영에 대한 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
 4. 기타 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
-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조(기타)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단 운영 규정 및 학내 제 규정을 준용하되, 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행세칙 등은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23.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제3조(지침의 폐지) 이 지침은 포항공과대학에서 수행하는 LINC3.0 사업이 중단 또는 종료될 때 폐지된 것으로 본다.